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주체 확대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00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개인정보 침해 신고 주체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20.
3.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인정보 침해 신고 주체 확대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¹⁾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u>개인정보처리자가</u>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u>침해받은 사람은</u>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u>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u> ----- ----- <u>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이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²⁾(이하 ‘개인정보침해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³⁾(이하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2) 다만,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도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신고가 가능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p544).
-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3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⁴⁾에 1,162건의 개인정보침해가 신고되었으며,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보호위원회는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고 있음.

< 개인정보침해 신고 건수 >

(단위: 건)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합계
신고 건수	7,844	1,923	1,162	416	11,345

주 1.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통계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2020년 8월 이전 시계열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여 2021년 자료부터 표시함.

2. 2021년은 선거문자 관련하여 다수의 신고건이 발생하여 이례적으로 신고건수가 많았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접수자료)

- 그런데 현행법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의 주체를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침해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침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권리·이익에 대한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4)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정보주체가 침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어 관계기관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사실이 신고되어 정보주체에게 침해사실 조사에 참여 및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관련 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미 누구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⁵⁾ 보호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제1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

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⁶⁾에서도 누구든지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⁷⁾을 고려할 때, 제3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⁸⁾하여 당사자인 정보주체가 침해사실 조사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주체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3. 위반행위의 내용
- ② ~ ④ (생략)

7) '신고센터의 이용안내'에 따르면 신고주체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등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조사대상자와 위반행위가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인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피신고인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104
